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33
----------	-------

발의연월일 : 2025. 8. 19.

발 의 자 : 한정애 · 이재강 · 김 윤
양문석 · 차지호 · 조인철
박희승 · 박홍배 · 이병진
주철현 · 김영배 · 김기표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도록 하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대부분의 남북합의서가 국회의 동의 없이 체결·비준되면서 정권의 변화에 따라 대북정책의 연속성과 일관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어 남북관계의 안정화와 일관성을 위해서는 남북합의서의 국회 동의를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있음.

따라서 남북합의서가 국내법으로서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합의서의 범위를 넓혀 남북관계 정책 수행에 있어서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남북관계의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함.

이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도 국회가 동의권을 가지는 남북합의서의 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7.4 남북공동성명을 포함한

기존 6건의 남북합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해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3항).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 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
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3.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체결·비준한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에 관한 남북합의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② (생 략) ③국회는 <u>국가나 국민에게 중</u> <u>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u> <u>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u> <u>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u> <u>대한 동의권을 가진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④ (생 략)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u> <u>나에 해당하는</u> ----- ----- ---. <u>1. 한반도의 평화 정착 및 유지</u> <u>에 관한 남북합의서</u> <u>2.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u> <u>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u> <u>의서</u> <u>3.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u> ④ (현행과 같음)